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03월 13일

회 사 명 : 삼성공조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회 장 고 호 곤

본점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전화번호) 055-280-2733

(홈페이지) <http://www.samsungcc.co.kr>

작성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심기종

(전화) 055-280-273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새 봄을 맞이하여 주주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00분
2. 장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 1)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감사인선임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 2) 부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49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80원

상법 제449조의 2와 제462조, 정관 제41조 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결의 예정일: 2019년 3월21일)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기

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행사 : 주주 본인의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은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 ①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 ② 주총참석장,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주의 신분증사본 중 1
- ③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은 원본만 인정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전자 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사외이사명
			김옥천 (출석률:100%)
			찬반여부
2018-01	2018.01.18	제4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
2018-02	2018.02.22	제48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2018-03	2018.02.26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찬성
2018-04	2018.03.16	제48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찬성
2018-05	2018.04.05	(주)이송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기간연장	찬성
2018-06	2018.04.27	SOC Meters에 대한 외화지급보증 승인	찬성
2018-07	2018.05.14	제49기 1분기 (연결)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승인	찬성
2018-08	2018.05.18	SOC VIETNAM에 대한 타법인출자 승인	찬성
2018-09	2018.08.13	제49기 반기 (연결)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승인	찬성
2018-10	2018.10.04	(주)이송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기간연장	찬성
2018-11	2018.11.13	제49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승인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평균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000	-	-	총이사 4명

[주]주총승인금액은 총이사에 대한 금액이며, 사외이사 등에 대한 지급실적은 없음.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지급보증	주식회사 이송 (계열회사)	2015.04.09 ~ 본 채무상환시 까지	4,170	5.37
지급보증	주식회사 이송 (계열회사)	2018.04.09 ~ 본 채무상환시 까지	3,960	5.10
지급보증	주식회사 이송 (계열회사)	2018.10.05 ~ 본 채무상환시 까지	2,760	3.55

※ 비율은 2017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삼성발레오(주) (계열회사)	부품매출등	2018.01.01 ~ 2018.12.31	801	7.40
	부품매입등	2018.01.01 ~ 2018.12.31	4,938	
	합계		5,739	
(주)이송 (계열회사)	지급보증	2015.04.09 ~ 본 채무상환시 까지	4,170	15.95
	지급보증	2018.04.09 ~ 본 채무상환시 까지	3,960	
	지급보증	2018.10.05 ~ 본 채무상환시 까지	2,760	
	부품매입등	2018.01.01 ~ 2018.12.31	1,490	
	합계		12,380	

※ 비율은 2017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사업부문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근거하여 볼 때 OEM(주문자생산방식)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용 부품인 라디에터, 오일쿨러, 변속기, 기타자동차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산업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거대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 소수업체 위주의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자동차의 제조, 기초소재 및 부품산업, 유통, 판매, 정비, 운수, 이용 등 많은 분야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자동차산업의 발달은 고용증대와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가 강한 수직계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1차 부품업체와 1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2, 3차 부품업체 등 중층적 생산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은 OEM으로 판매되므로 부품업체의 진입과 성장은 완성차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강하며, 쌍방간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2018년말 현재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생산대수로는 세계7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내수시장은 자동차 대중화 확산기였던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자동차 보급이 성숙단계에 들어선 현재 내수시장은 지속적인 성장보다는 경기변동과 정부의 산업지원정책, 노사관계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 또한, 지역별 경제상황과 수요측면, 환율과 유가 등의 글로벌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의 주생산품인 라디에터와 오일쿨러는 주력인 자동차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중장비 및 농기계 제조회사와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아래의 자료는 참고치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추이

구 분	단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생산대수	천대	4,028	4,114	4,228	4,555	4,524
내수판매	천대	1,552	1,560	1,600	1,589	1,463
수출판매	천대	2,449	2,530	2,621	2,974	3,063
보유대수	천대	23,202	22,528	21,803	20,989	20,117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상품으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상품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 가격동향에 의해서도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보급율, 도로포장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처분소득과 유가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보급율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경제침체기에는 대표적인 내구소비재인 자동차의 수요는 소비위축의 심리적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성은 소비자들이 보유차량의 가격을 연간소득의 일정비율에 맞추는 구매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부품산업은 내수 및 수출시장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완성차업체의 신차 개발에 따라 주문자 상표로 공급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부품의 공급은 기술수준, 가격경쟁력, 품질수준에 의하여 제한적인 입찰 방식 또는 전사적 업체평가방식인 심의구매방식 등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의 경쟁력은 제품선택의 기초요소로써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로 구성되지만, 이들 경쟁요소들은 생산성과 임금, 제품개발과 공정능력 등 기업의 조직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격과 품질 등 표면상의 경쟁력 요소들이 제품의 단기 경쟁능력의 성격을 갖는다면, 생산성과 공정능력 등 기업조직력은 장기 동태적 경쟁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당사의 주요 매입유형은 주재료, 보조재료, 매입부분품, 외주가공으로 구분됩니다.

주재료에는 알루미늄, 동, 황동, 철판, 스텐 등이 있으며, 매입비중은 46.4%입니다. 매입부분품은 주요 제품인 라디에터와 오일쿨러, 변속기의 부품들로 매입비중은 42.2%입니다. 보조재료와 외주가공비의 매입비중은 각각 1.3%와 10.1%입니다. 당사의 자원조달상 특징은 시세변동에 따라 공급처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복수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역별 매입구조는 국내조달과 해외조달 비중이 각각 83%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인력수급은 회사의 우수한 재무구조와 작업조건의 안정성, 쾌적한 작업 환경, 창원시의 인구밀집지역내 국가관리공단에 위치하여 양호한 편입니다.

(6) 관련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자동차산업 관련법령 및 주요규제로는 조세제도, 환경관련규제, 소비자보호제도, 교통안전규제, 기타 규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법령인 조세제도는 준조세 성격인 공채를 포함하여 모두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과 보유단계의 세수는 감소하고, 운행단계의 세수는 증가하는 주행세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 및 제도들의 최근 흐름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기업에게 수익감소와 투자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FTA 협상, 주요 교역국들의 자동차 수입 규제와 기술기준강화 등 통상현안의 결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사업부문의 구분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당사와 한국내 2개사 및 해외 4개사, 간주별도실체 1개사 등 7개의 종속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별로는 자동차부품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업부문별 주요제품 및 주요고객

사업부문	자동차부품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소속회사	삼성공조(주), (주)이송, SCC Vietnam PT. T.S.I, 특정금전신탁(주1)	태일테크(주), SCC Meters Kosan Maldives
주요재화및용역	라디에터, 오일쿨러, 변속기부품	LCD장비, 계량기, 관광업

사업부문	자동차부품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주요고객	현대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타타대우상용차, 현대위아 Deere & Company, 대리점 등	개인소비자 등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간주별도실체로 분류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 금융상품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사업부문을 분류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와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4-1-1조(일반원칙)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일반자금운용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2) 지역별 현황 및 종속기업 변동현황

기업명	주요사업	소재지	연결실체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제49기	제48기	제47기
삼성공조(주)_지배회사	자동차부품제조판매	경남 창원시 내동	-	-	-
(주)이송	자동차부품제조판매	경남 창원시 내서읍	100%	100%	100%
PT. T.S.I.	자동차부품제조판매	Indonesia Bekasi	55%	55%	55%
SOC VIETNAM	자동차부품제조판매	Vietnam Hanoi	100%	-	-
SOC METERS	계량기 제조판매	Bangladesh Dhaka	94.6%	94.6%	99.5%
태일테크(주)	LCD장비제조판매	경남 창원시 내동	70%	70%	70%
KOSAN Maldives	관광사업(게임사업)	Maldives Male	93%	93%	93%
특정금전신탁	자산운용(금융상품)	경남 창원시 내동	100%	100%	100%

중단사업부문으로 분류해 오던 종속회사 삼성유통과 자동차부품사업부문 종속회사 (주)카이코는 전기 중 법원의 청산등기 종결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구 분	제49기	제48기	제47기
자동차부품사업	매출액	80,861,051	91,757,950	84,675,642
	영업이익(손실)	(957,626)	4,514,737	2,019,541
	총자산	255,540,425	258,251,527	251,376,980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구 분	제49기	제48기	제47기
기타사업	매출액	-	-	-
	영업이익(손실)	(172,172)	(249,921)	(156,561)
	총자산	4,627,563	4,833,625	1,349,934
중단사업	매출액	-	-	-
	영업이익(손실)	-	-	-
	총자산	-	-	1,802
합 계	매출액	80,861,051	91,757,950	84,675,642
	영업이익(손실)	(1,129,798)	4,264,816	1,862,980
	총자산	260,167,988	263,085,152	252,728,716

※ 상기 금액은 연결실체 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부문별 금액을 기재함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 내에는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와 당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연결실체는 자동차부품사업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총자산이 연결실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자동차부품사업부문을 지배적 단일 사업부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영업개황

1) 최근 사업년도의 요약 연결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49기	제48기	제47기
매출총액	80,861,051	91,757,950	84,675,642
- 내수판매	62,644,517	71,013,224	66,617,873
- 해외수출	18,216,534	20,744,726	18,057,769
영업이익(손실)	(1,129,798)	4,264,816	1,862,980
연결당기순이익	6,332,359	10,988,410	7,750,829
자산총계	260,167,988	263,085,152	252,728,716
부채총계	46,285,386	54,874,537	53,998,464
자본총계	213,882,602	208,210,615	198,730,252

2) 연결실체의 영업개황

연결실체의 당 사업년도 중 주요 영업개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은 주요국간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부진,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저성장 기조가 심해진 가운데 내수경기 침체 지속, 전기의 비경상적 수주물량 기저효과 등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총매출액은 전기 대비 11.9% 감소한 809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시장별로는 내수와 수출이 전기 대비 각각 11.8%와 12.2% 감소하였습니다. 제품별로는 라디에터, 변속기, 기타 매출이 전기 대비 각각 10.8%와 6.8%, 55.8% 감소한 반면, 농기계용 수출 호조에 힘입은 오일쿨러 매출은 전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 감소와 그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임금인상, 품질관련 비용발생 등으로 전기 흑자에서 적자 전환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영업손실 발생과 비경상적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전기 대비 42.4% 감소한 63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이같은 영업실적과 자산 부채변동에 따라 연결실체의 총자산은 전기말 대비 1.1% 감소한 2,60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총부채는 전기말 대비 15.7% 감소한 46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결실체에서 재무안정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부채비율은 21.6%를 기록하며 전기말 보다 소폭 개선 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구 분	제49기	제48기	제47기
국내시장규모(A)	3,800억원	3,900억원	4,000억원
국내제품매출(B)	530억원	640억원	577억원
시장점유율(B/A)	13.9%	16.4%	14.4%

주1) 국내제품매출 : 주요 제품인 라디에터, 오일쿨러 매출액 중 직수출을 제외한 금액임

연결실체의 주요 제품인 라디에터 및 오일쿨러의 국내 시장규모는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수요자가 자동차, 중장비, 농기계 제조업체로 구성되는 OEM시

장과 A/S시장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객관적인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결실체가 자체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라디에터 및 오일쿨러의 당기 국내 시장규모는 3,800억원이며 그 중 약 13% 내외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주요경쟁업체로는 갑을오토텍, 모던원진, 코렌스 외 다수회사가 있으며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 파악은 각 회사별로 제품의 품목과 개념이 서로 다르고, 당사 제품군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혼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의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기 중 내수시장 규모는 전기 대비 2.6% 감소한 반면 연결실체의 판매금액은 17.2%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의 주요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의 시장점유율은 1.5% 내외로 추정되며, 당기 매출액은 87억원이고 주요 경쟁업체로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자동차 부품시장은 자동차의 생산대수 및 등록대수 등 완성차업체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전체 생산량 중 완성차업체의 조립부품으로 직납하는 OEM용 시장과 A/S시장의 보수용부품, 직수출시장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OEM용 시장은 완성차업체의 경기동향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수직적 시장형태로 능동적 수주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수용시장은 완성차업체의 주문에 의한 시장과 제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판매 및 수주할 수 있는 시장으로 구성되며, 수평적 시장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직수출시장은 세계 유수의 메이커들과 품질 및 가격경쟁 속에서 수주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는 보수용시장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동차 보급율의 증가와 대체기간 연장추세에 따라 점차 국내외 보수용시장에 대한 각 경쟁업체간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업체의 해외공장 가동과 글로벌화로 현지생산을 위한 KD방식 부품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의 미래 성장잠재력도 이 시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SCC METERS에 대한 타법인 출자

1)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피출자회사	주요사업	취득일(주1)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재원
SCC METERS	계량기 제조 판매사업	2016.09.08	4,897	94.6%	자기자금

(주1) 2016년 9월8일부터 2017년 7월3일까지 3회 분할하여 출자함

2) 당기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4,633	232	4,401	-	(165)	(165)

3) 사업목적

SCC METERS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지의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 대체사업(기계식 후불 계량기→스마트 선불식 계량기) 참여를 목표로, 당사와 사업 파트너가 2016년 9월8일 최초로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전기 중에 공동투자자와 함께 추가 출자가 있었습니다.

4) 진행상황

동사는 현지법률에 따라 법인설립과 시제품 시험, 공장신축, 생산설비 도입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현지사정으로 영업개시가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현지 정부의 계량기 대체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입찰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SCC VIETNAM에 대한 타법인 출자

1)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피출자회사	주요사업	취득일(주1)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재원
SCC VIETNAM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2018.07.05	5,524	100%	자기자금

(주1) 2018년 7월5일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4회 분할하여 출자함

2) 당기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5,531	7	5,524	-	(46)	(40)

3) 사업목적

수출 확대와 해외 아웃소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출자가 이루어졌으며, 단기적으로는 당사의 기존 거래처인 현대자동차의 베트남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대우버스 베트남, VEAM CORP 등의 잠재 내수거래처와 해외 신규고객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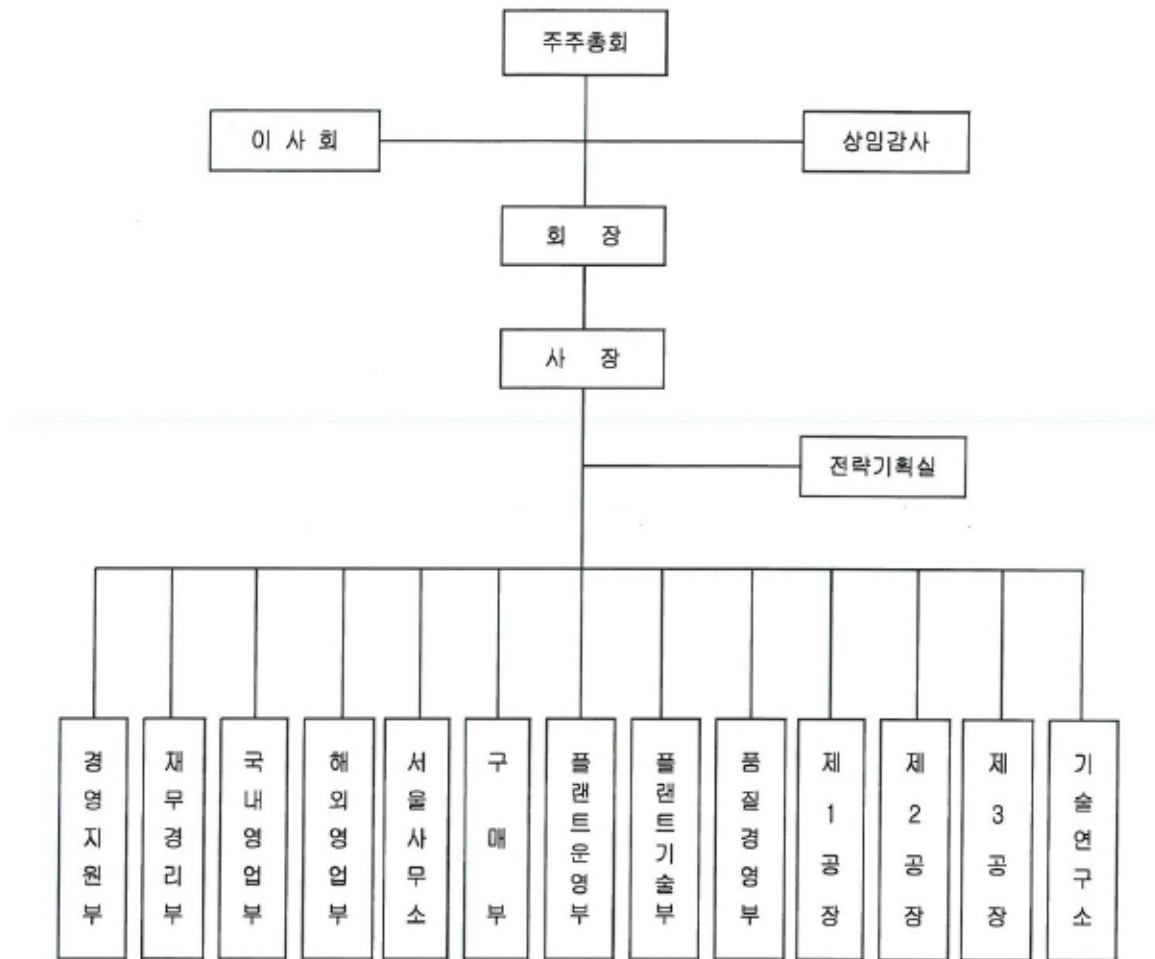
4) 진행상황

2018년 법인 설립절차와 공장부지 사용권 취득을 완료하고, 2019년 현재 공장신축, 주요 설비도입 및 금형의 신작 및 이관, 테스트용 부품 수입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019년 중반 이후 양산을 목표로 현지 구매처 발굴, 인력수급 등 전반적인 영업개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3) SCC METERS와 SCC VIETNAM에 대한 타법인출자 사업전망

당사는 현지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경우 향후 연결실체의 매출증대와 및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기구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 2와 제462조, 정관 제41조 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결의 예정일 : 2019년 03월21일)

1.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中 "1-나. 회사의 현황" 참조

2. 제4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49(당)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48(전)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삼성공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9(당)기말		제48(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145,458,662,816		159,853,845,672
현금및현금성자산	14,051,458,985		8,305,616,5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610,557,824		19,611,546,187	
유동금융자산	103,616,229,218		122,644,402,245	
재고자산	11,856,994,264		8,228,432,484	
기타유동자산	253,223,025		748,070,609	
당기법인세자산	70,199,500		315,777,647	
비유동자산		114,709,325,468		103,231,306,475
유형자산	28,801,058,306		29,865,365,824	
무형자산	3,022,175,781		-	
투자부동산	864,417,096		872,473,550	
지분법적용기업투자	17,583,013,418		16,810,925,250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470,578,763		213,747,951	

과 목	제49(당)기말		제48(전)기말	
비유동금융자산	63,869,216,861		50,358,433,342	
당기손인인식금융자산	-		5,030,001,879	
이연법인세자산	98,865,243		80,358,679	
자 산 총 계		260,167,988,284		263,085,152,147
부 채				
유동부채		41,099,807,209		49,829,910,68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586,940,907		39,320,082,114	
유동차입금	9,075,000,000		9,408,332,000	
당기법인세부채	837,050,208		-	
기타유동부채	770,745,514		961,811,745	
유동충당부채	830,070,580		139,684,829	
비유동부채		5,185,578,998		5,044,626,567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49,187,307		1,376,931,065	
순확정급여부채	1,301,887,334		569,040,425	
이연법인세부채	2,534,504,357		3,098,655,077	
부 채 총 계		46,285,386,207		54,874,537,255
자 본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자본		212,543,487,439		206,933,661,383
자본금	4,063,157,000		4,063,157,000	
기타불입자본	782,182,357		782,182,357	
기타자본구성요소	2,216,856,164		1,445,434,824	
이익잉여금	205,481,291,918		200,642,887,202	
비지배지분		1,339,114,638		1,276,953,509
자 본 총 계		213,882,602,077		208,210,614,89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60,167,988,284		263,085,152,147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49(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공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9(당)기	제48(전)기
매출액	80,861,050,609	91,757,949,584
매출원가	(73,443,199,620)	(80,028,399,977)
매출총이익	7,417,850,989	11,729,549,607
판매비	(3,147,693,877)	(2,513,776,058)
관리비	(5,399,955,121)	(4,950,957,831)
영업이익(손실)	(1,129,798,009)	4,264,815,718
금융수익	8,365,727,630	8,192,183,227
금융비용	(316,657,561)	(316,716,607)
지분법손익	1,772,829,651	1,925,439,468
기타영업외이익	985,941,721	920,562,491
기타영업외비용	(1,658,319,772)	(994,924,0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019,723,660	13,991,360,275
법인세비용	(1,687,364,665)	(3,002,950,705)
당기순이익	6,332,358,995	10,988,409,570
기타포괄손익	141,528,590	(1,063,755,95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79,713,998)	(198,446,21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79,135,642)	(198,446,210)
지분법자본변동	(578,356)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721,242,588	(865,309,7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610,943,558	-
해외사업환산손익	110,299,030	(823,473,76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0,459,231)
지분법자본변동	-	(1,376,746)
총포괄이익	6,473,887,585	9,924,653,615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6,262,362,254	11,208,818,687
비지배지분	69,996,741	(220,409,117)

과 목	제49(당)기		제48(전)기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6,411,726,456		10,353,151,165	
비지배지분	62,161,129		(428,497,550)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781		1,398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49(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공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 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에 귀속되는자본	비지배지분	총 계
2017. 01. 01 (보고금액)	4,063,157,000	782,182,357	2,125,618,473	190,331,262,748	197,302,220,578	1,428,031,059	198,730,251,637
배당금의지급	-	-	-	(721,710,360)	(721,710,360)	-	(721,710,360)
당기순이익	-	-	-	11,208,818,687	11,208,818,687	(220,409,117)	10,988,409,57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40,459,231)	-	(40,459,231)	-	(40,459,231)
해외사업환산손익	-	-	(638,347,672)	-	(638,347,672)	(185,126,096)	(823,473,768)
지분법자본변동	-	-	(1,376,746)	-	(1,376,746)	-	(1,376,74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75,483,873)	(175,483,873)	(22,962,337)	(198,446,210)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	-	-	-	-	277,420,000	277,420,000
2017. 12. 31 (전기말)	4,063,157,000	782,182,357	1,445,434,824	200,642,887,202	206,933,661,383	1,276,953,509	208,210,614,892
2018. 01. 01 (보고금액)	4,063,157,000	782,182,357	1,445,434,824	200,642,887,202	206,933,661,383	1,276,953,509	208,210,614,892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	-	20,324,530	(20,324,530)	-	-	-
수정후 재작성된 금액	4,063,157,000	782,182,357	1,465,759,354	200,622,562,672	206,933,661,383	1,276,953,509	208,210,614,892
배당금의 지급	-	-	-	(801,900,400)	(801,900,400)	-	(801,900,400)
당기순이익	-	-	-	6,262,362,254	6,262,362,254	69,996,741	6,332,358,9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610,943,558	-	610,943,558	-	610,943,558
해외사업환산손익	-	-	140,731,608	-	140,731,608	(30,432,578)	110,299,030
지분법자본변동	-	-	(578,356)	-	(578,356)	-	(578,3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601,732,608)	(601,732,608)	22,596,966	(579,135,642)
2018. 12. 31 (당기말)	4,063,157,000	782,182,357	2,216,856,164	205,481,291,918	212,543,487,439	1,339,114,638	213,882,602,077

④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49(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공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9(당)기	제48(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74,304,551	15,064,902,665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7,653,722,492)	8,657,294,552
가. 당기순이익	6,332,358,995	10,988,409,570
나. 조정사항	(1,983,799,858)	(2,003,628,392)
법인세비용	1,687,364,665	3,002,950,705
퇴직급여	966,170,639	1,026,767,370
감가상각비	3,253,704,235	3,334,965,932
무형자산상각비	160,251,401	-
외화환산손실	250,846,654	432,723,319
판매보증비	652,968,524	163,503,594
유형자산처분손실	2,426,606	175,968,56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43,936,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8,4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31,488,940
기타의대손상각비	503,573,085	-
지분법손실	10,278,558	-
잡손실	548,817,325	-
이자비용	264,321,561	285,227,667
이자수익	(8,140,733,860)	(7,493,951,002)
배당금수익	(189,732,300)	(84,987,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35,261,47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583,242,91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30,001,879)
외화환산이익	(19,788,337)	(102,799,542)
유형자산처분이익	(11,209,928)	(68,118,651)
지분법이익	(1,783,108,209)	(1,925,439,468)
정부보조금과 상계한 제비용	(157,025,007)	(168,683,596)
다. 순운전자본의 변동	(12,002,281,629)	(327,486,626)
매출채권의 (증가)감소	2,907,536,888	1,276,554,915
기타채권의 (증가)감소	(175,488,077)	(189,664,160)
재고자산의 (증가)감소	(3,627,828,974)	(1,331,057,528)
기타유동자산의 (증가)감소	(8,725,501)	1,041,411,50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8,830,281,902)	(75,940,035)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528,505,655)	339,820,835

과 목	제49(당기)		제48(전기)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93,646,231)		138,691,255	
유동총당부채의 증가(감소)	(511,400,098)		(159,901,779)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67,000,000)		17,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감소)	180,023,130		-	
퇴직금의 지급	(1,962,154,295)		(1,236,411,477)	
사외적립자산의 (증가)감소	815,189,086		(147,990,161)	
2. 이자의 수취	9,399,227,961		7,884,274,858	
3. 배당금의 수취	1,189,732,300		684,987,430	
4. 이자의 지급	(271,404,525)		(288,316,499)	
5. 법인세의 납부	(1,189,528,693)		(1,873,337,67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02,590,990		(21,554,556,119)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15,312,841,259		148,409,375,30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5,065,263,34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2,00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26,128,043,839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5,229,140	
기계장치의 처분	3,050,000		196,394,200	
차량운반구의 처분	8,961,927		21,890,910	
보증금의 감소	187,808,483		54,941,022	
정부보조금의 수령	235,918,249		262,635,48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48,021,207,752)		(126,991,169,83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73,007,643,241)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5,000,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59,268,646,42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39,715,828)		(246,854,028)	
구축물의 취득			(7,393,610)	
기계장치의 취득	(558,034,071)		(1,068,244,181)	
차량운반구의 취득	-		(28,616,000)	
공구와기구의 취득	(24,334,932)		(35,422,504)	
비품의 취득	(36,785,877)		(94,792,325)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3,034,377,421)		(3,752,022,900)	
무형자산의 취득	(2,044,513,860)		-	
보증금의 증가	(444,639,295)		(159,904,21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35,232,400)		(2,215,756,36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		19,100,000,000	
비지배지분의 유상증자 참여	-		277,42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0)		(20,6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33,332,000)		(271,466,000)	
배당금의 지급	(801,900,400)		(721,710,36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5,741,663,141		(8,705,409,814)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305,616,500		17,887,028,357

과 목	제49(당)기		제48(전)기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179,344		(876,002,043)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051,458,985		8,305,616,500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9(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공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성공조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4년 5월 20일 삼성공업사로 설립된 후 1970년 6월 11일 삼성라디에터공업(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2000년 6월 9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라디에터와 오일쿨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7년 11월 28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00년 6월 9일자로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4,063백만원이며, 최대주주는 고희곤 주주입니다. 최대주주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6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3,819,876주이고,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수의 47.01%입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영업활동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결산월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당기말	전기말
PT.Three Star Indonesia	자동차부품제조	인도네시아	12월말	55.00	55.00
(주)이송	자동차부품제조	한국	12월말	100.00	100.00
태일테크(주)	LCD장비제조업	한국	12월말	70.00	70.00
Kosan Maldives Pvt Ltd.	관광업	몰디브	12월말	93.00	93.00
SCC METERS LTD.	계량기제조업	방글라데시	12월말	94.57	94.57
SCC VIETNAM CO.,LTD	자동차부품제조	베트남	12월말	100.00	-
특정금전신탁 (주1)	자산운용	한국	12월말	100.00	100.00

(주1) 연결실체가 자산운용목적으로 가입한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으로 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간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PT.Three Star Indonesia	(주)이송	SCC METERS LTD.	SCC VIETNAM CO.,LTD	특정금전신탁
유동자산	2,949,063	5,429,346	965,046	2,289,159	111,949
비유동자산	902,351	12,607,227	3,667,642	3,241,765	9,997,731
자산 계	3,851,414	18,036,573	4,632,688	5,530,924	10,109,680
유동부채	1,011,344	13,411,063	231,464	6,556	-
비유동부채	395,461	1,344	-	-	-
부채 계	1,406,805	13,412,407	231,464	6,556	-
지배지분	1,344,535	4,624,166	4,162,237	5,524,368	10,109,680
비지배지분	1,100,074	-	238,987	-	-
자본 계	2,444,609	4,624,166	4,401,224	5,524,368	10,109,680

3) 당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PT.Three Star Indonesia	(주)이송	SCC METERS LTD.	SCC VIETNAM CO.,LTD	특정금전신탁
매출액	4,648,074	10,733,909	-	-	-
영업손익	103,529	788,718	(164,844)	(46,007)	-
당기순손익	180,317	364,036	(164,844)	(40,448)	549,759
기타포괄손익	(34,796)	-	144,059	40,965	730
당기총포괄손익	145,521	364,036	(20,785)	517	550,489

4) 당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PT.Three Star Indonesia	(주)이송	SCC METERS LTD.	SCC VIETNAM CO.,LTD	특정금전신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8,554	(334,116)	(164,845)	(398,383)	493,24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1,483)	(93,927)	(181,205)	(3,253,294)	(118,72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3,332)	-	5,523,851	(374,51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37,071	(761,375)	(346,050)	1,872,174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87,428	1,120,245	1,259,016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5,213)	-	29,295	31,036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59,286	358,870	942,261	1,903,210	-

5) 당기와 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 유
SCC VIETNAM CO.,LTD	지배기업 삼성공조(주)의 신규 출자

나.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 유
삼성유통(주)	법인 청산종결 등기
(주)카이코	법인 청산종결 등기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제출을 위하여 2019년 2월 25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 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2018년 공시사항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의 개정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다)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대가도 아님)는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④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16,009천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20,324천원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195,685천원의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 등은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실체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른 총당부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부채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④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④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범 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9,825,294	19,825,294
장단기금융상품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11,947,178	111,947,178
파생결합증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30,002	5,030,002
상장주식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10,069	210,069
회사채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0,845,589	60,845,58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40,697,013	40,697,013
차입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9,408,332	9,408,33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범적인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규정의 내용 및 연결실체가 적용한 회계정책은 아래 '수익인식'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신규 도입 이전의 계약은 모두 과거 기준에 따라 완료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전환효과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② 리스의 식별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ㄱ.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현금지급액을 연결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총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나.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도상환특성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조기상환의 원인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손상규정 포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사항(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손실을 배분하거나 손상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 장부금액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최초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개정사항은 관련된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특정 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측정 대상 이전보유지분은 공동영업과 관련하여 인식되지 않은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당사자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 전후에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동 기준서는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 인식 후에 결정되며,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측정과 관련된 문단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제도의 변경 후의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재측정에 사용된 갱신된 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이자의 경우, 개정사항에서는 제도의 개정 이후 기간 동안의 순이자 는 동 기준서 문단 99에 따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대한 이번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도의 개정, 축소 및 정산에만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제정)

동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은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해석서를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거나 비교정보를 소급해서 재작성하지 않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 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 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 의 함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영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 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7)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자동차용, 농기계용, 중장비용 공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자동차, 농기계 및 중장비용 공조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화가 고객의 특정 위치에 운송(인도)되거나 사용되는 등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된 후에 고객은 재화를 유통하는 방식과 가격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재화를 판매할 때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연결실체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각 거래에 대해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등을 사용합니다.

3) 변동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연결실체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4) 보증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5) 본인 대 대리인

연결실체는 고객과 맺은 계약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부품의 제작을 위하여 금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금형의 대가를 일시불로 정산하고, 금형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는 건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연결실체는 본인으로 금형 제작과 관련한 수행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일시불 정산 금형의 제작과 관련한 수행의무로 인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증가합니다.

(8)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 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 적립액은 제도로 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 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15 ~ 50년
구 축 물	15 ~ 25년
기 계 장 치	8 ~ 12년
기타유형자산	4 ~ 6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8)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총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질적 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경제적·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을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 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총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총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총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1)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 · 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회사의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49(당)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48(전)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삼성공조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9(당)기말	제48(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135,368,269,666	145,627,785,609
현금및현금성자산	10,687,652,095	5,736,405,01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208,193,491	15,550,848,938
당기법인세자산	-	284,194,255
유동금융자산	102,454,724,071	116,711,397,167
재고자산	9,854,277,793	6,626,627,394
기타유동자산	163,422,216	718,312,843
비유동자산	100,460,659,491	91,001,547,823
유형자산	11,549,397,874	12,501,182,656
무형자산	989,191,135	-
투자부동산	864,417,096	872,473,55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33,719,123,743	28,011,286,242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8,839,000	90,252,000
비유동금융자산	52,919,690,643	49,526,353,375
자 산 총 계	235,828,929,157	236,629,333,432
부 채		
유동부채	28,088,426,032	33,470,812,75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6,109,319,012	32,745,060,302
당기법인세부채	775,002,793	-
기타유동부채	374,033,647	586,067,622
유동총당부채	830,070,580	139,684,829
비유동부채	2,708,846,644	2,735,618,788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49,187,307	1,376,931,065
순확정급여부채	905,081,893	155,687,004
이연법인세부채	454,577,444	1,203,000,719
부 채 총 계	30,797,272,676	36,206,431,541

과 목	제49(당)기말		제48(전)기말	
자 본				
자본금		4,063,157,000		4,063,157,000
기타불입자본		782,182,357		782,182,357
기타자본구성요소		414,689,332		(216,009,026)
이익잉여금		199,771,627,792		195,793,571,560
자 본 총 계		205,031,656,481		200,422,901,89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5,828,929,157		236,629,333,432

②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49(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공조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9(당)기	제48(전)기
매출액	66,968,670,997	77,602,682,585
매출원가	(61,346,035,759)	(67,108,394,836)
매출총이익	5,622,635,238	10,494,287,749
판매비	(3,053,568,027)	(2,362,697,977)
관리비	(4,372,932,910)	(3,848,687,274)
영업이익(손실)	(1,803,865,699)	4,282,902,498
금융수익	9,080,218,288	8,507,620,507
금융비용	(54,950,874)	(52,278,854)
종속기업투자손익	251,769,668	210,317,457
기타영업외이익	807,709,027	853,307,286
기타영업외비용	(1,406,451,780)	(763,679,49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74,428,630	13,038,189,398
법인세비용	(1,444,796,346)	(2,720,483,509)
당기순이익	5,429,632,284	10,317,705,889
기타포괄손익	(18,977,294)	(187,878,02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629,351,122)	(147,418,79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29,351,122)	(147,418,7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610,373,828	(40,459,2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610,373,828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0,459,231)
총포괄이익	5,410,654,990	10,129,827,864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677	1,287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49(당)기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19년 3월28일

제48(전)기 201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18년 3월23일

삼성공조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49(당)기	제48(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827,589,672	10,248,866,77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7,633,040	78,579,678
2.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20,324,530)	-
3. 당기순이익	5,429,632,284	10,317,705,889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29,351,122)	(147,418,794)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806,666,666	1,100,666,667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806,666,666	1,100,666,667
합 계	5,634,256,338	11,349,533,44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5,591,520,320	11,301,900,4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0,000,000	3,500,000,000
2. 사업확장적립금	2,950,000,000	7,000,000,000
3. 배당금	641,520,320	801,900,400
(1) 현금배당[주당배당금(율)] 보통주 당기 : 80원(16%) 전기 : 100원(20%)	641,520,320	801,900,4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2,736,018	47,633,040

④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49(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공조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2017.01.01 (보고금액)	4,063,157,000	782,182,357	(175,549,795)	186,344,994,825	191,014,784,387
배당금의 지급	-	-	-	(721,710,360)	(721,710,360)
당기순이익	-	-	-	10,317,705,889	10,317,705,88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40,459,231)	-	(40,459,23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47,418,794)	(147,418,794)
2017.12.31 (전기말)	4,063,157,000	782,182,357	(216,009,026)	195,793,571,560	200,422,901,891
2018.01.01 (보고금액)	4,063,157,000	782,182,357	(216,009,026)	195,793,571,560	200,422,901,891
회계정책 변경효과	-	-	20,324,530	(20,324,530)	-
수정후 재작성된 금액	4,063,157,000	782,182,357	(195,684,496)	195,773,247,030	200,422,901,891
배당금의 지급	-	-	-	(801,900,400)	(801,900,400)
당기순이익	-	-	-	5,429,632,284	5,429,632,2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610,373,828	-	610,373,8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629,351,122)	(629,351,122)
2018.12.31 (당기말)	4,063,157,000	782,182,357	414,689,332	199,771,627,792	205,031,656,481

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49(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공조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9(당)기	제48(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88,930,535	14,855,684,663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7,139,755,038)	8,437,788,773
가. 당기순이익	5,429,632,284	10,317,705,889
나. 조정사항	(3,281,862,130)	(3,084,233,797)
법인세비용	1,444,796,346	2,720,483,509
퇴직급여	862,860,612	876,199,632
감가상각비	1,779,544,123	1,720,232,346
무형자산상각비	148,817,866	-
외화환산손실	240,822,343	432,723,319
판매보증비	652,968,524	163,503,59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43,936,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8,4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31,488,940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
기타의대손상각비	503,573,085	-
잡손실	548,817,325	-
이자비용	2,614,874	20,789,914
이자수익	(7,890,485,988)	(7,239,390,161)
배당금수익	(1,189,732,300)	(684,987,43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583,242,916)
외화환산이익	(19,788,337)	(102,799,542)
유형자산처분이익	(10,211,928)	(60,235,949)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251,769,668)	(210,317,457)
정부보조금과 상계한 채비용	(157,025,007)	(168,683,596)
다. 순운전자본의 변동	(9,287,525,192)	1,204,316,681
매출채권의 (증가)감소	1,926,387,304	216,070,768
기타채권의 (증가)감소	120,631,088	(82,274,335)
재고자산의 (증가)감소	(3,227,650,399)	(1,781,014,606)
기타유동자산의 (증가)감소	51,317,542	1,025,300,24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6,056,039,912)	2,437,437,906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396,850,047)	497,643,535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206,594,535)	235,691,683
유동총당부채의 증가(감소)	(511,400,098)	(159,901,779)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67,000,000)	17,000,000

과 목	제49(당)기		제48(전)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	180,023,130		-	
퇴직금의 지급	(1,903,532,615)		(1,092,106,215)	
사외적립자산의 (증가)감소	803,183,350		(109,530,523)	
2. 이자의 수취	9,170,238,152		7,622,416,460	
3. 배당금의 수취	1,189,732,300		684,987,430	
4. 이자의 지급	(2,614,874)		(20,789,914)	
5. 법인세의 납부	(1,128,670,005)		(1,868,718,08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55,156,062		(21,978,500,57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10,499,827,560		143,496,053,2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2,00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26,128,043,839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10,064,783,367		4,998,153,077	
기계장치의 처분	3,050,000		48,900,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7,161,928		11,890,910	
정부보조금의 수령	196,281,249		210,854,484	
보증금의 감소	107,730,460		23,46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47,979,693,984)		(122,178,156,1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3,010,643,241)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59,268,646,42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20,000,000)		(12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5,520,851,200)		(13,588,452,899)	
기계장치의 취득	(506,034,071)		(882,244,181)	
차량운반구의 취득	-		(28,616,000)	
비품의 취득	(35,174,546)		(39,775,454)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1,614,964,000)		(690,755,001)	
보증금의 증가	(436,317,460)		(99,21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1,900,400)		(721,710,36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		19,1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0)		(19,100,000,000)	
배당금의 지급	(801,900,400)		(721,710,36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942,186,197		(7,844,526,26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736,405,012		13,706,577,251
VI.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9,060,886		(125,645,970)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687,652,095		5,736,405,012

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9(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8(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공조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성공조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4년 5월 20일 삼성공업사로 설립된 후 1970년 6월 11일 삼성라디에터공업(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2000년 6월 9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라디에터와 오일쿨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7년 11월 28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00년 6월 9일자로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4,063백만원이며, 최대주주는 고희곤 주주입니다. 최대주주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6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3,819,876주이고,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수의 47.01%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한편,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25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공시사항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사의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다)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대가도 아님)는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④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16,009천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20,324천원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195,685천원의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 등은 당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 리스채권, iii)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총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총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총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총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대손총당금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른 총당부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총당금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부채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④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④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범 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5,641,101	15,641,101
장단기금융상품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5,182,093	105,182,093
상장주식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10,069	210,069
회사채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0,845,589	60,845,58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4,121,991	34,121,991
금융보증계약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67,617	67,61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범적인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규정의 내용 및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은 아래 '수익인식'에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신규 도입 이전의 계약은 모두 과거 기준에 따라 완료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전환효과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② 리스의 식별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당사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ㄱ.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총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나.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도상환특성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조기상환의 원인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손상규정 포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사항(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손실을 배분하거나 손상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 장부금액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최초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개정사항은 관련된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특정 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측정 대상 이전보유지분은 공동영업과 관련하여 인식되지 않은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당사자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 전후에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동 기준서는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 인식 후에 결정되며,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측정과 관련된 문단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제도의 변경 후의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재측정에 사용된 갱신된 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이자의 경우, 개정사항에서는 제도의 개정 이후 기간 동안의 순이자는 동 기준서 문단 99에 따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대한 이번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도의 개정, 축소 및 정산에만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제정)

동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은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해석서를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거나 비교정보를 소급해서 재작성하지 않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수익인식

당사는 자동차용, 농기계용, 중장비용 공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자동차, 농기계 및 중장비용 공조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화가 고객의 특정 위치에 운송(인도)되거나 사용되는 등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된 후에 고객은 재화를 유통하는 방식과 가격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재화를 판매할 때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는 각 거래에 대해 예상 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등을 사용합니다.

3) 변동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4) 보증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5) 본인 대 대리인

당사는 고객과 맺은 계약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부품의 제작을 위하여 금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금형의 대가를 일시불로 정산하고, 금형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는 건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당사는 본인으로 금형 제작과 관련한 수행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일시불 정산 금형의 제작과 관련한 수행의무로 인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증가합니다.

(3)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 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정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 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로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15 ~ 30년
구 축 물	15년
기 계 장 치	8년
기타유형자산	4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2)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총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질적 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경제적·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을 내부 신용 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총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총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총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 · 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인상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별도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회사의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목적
<p>제6조(주식의 종류 및 액면)</p> <p>(1)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1주당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p> <p>(2)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p>	<p>제6조(일주의 금액)</p> <p>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p> <p>(2) 삭제</p>	전자증권법 시행내용 도입으로 불필요한 조문삭제
신설	제6조의 2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조문이관
신설	제6조의 3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전자등록 의무화로 신설
<p>제9조(명의개서대리인)</p> <p>(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p> <p>(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명의개서대리인)</p> <p>(1) 좌동</p> <p>(2) 좌동</p> <p>(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p> <p>(4) 좌동</p>	주식등의 전자등록 의무화로 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p>제1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9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제10조 삭제	전자등록 의무화로 불필요한 조문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목적
신설	제13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자등록 의무화로 신설
제14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9조,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삭제로 문구정비
제41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1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외부감사법 변경내용 반영
	부 칙 이 정관은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6조의3, 제9조, 제10조, 제13조의2 및 제14조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일을 감안하여 단서신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 옥 천	1951.05.25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 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 옥 천	칠북단감영농법인 감사	○ 울산대 토목공학과 졸업 ○ 前 한국감정원 부장 역임 ○ 現 칠북단감영농법인 감사	해당사항없음

※ 기타 참고사항

- ① 이사후보자 1명의 선임사유는 임기만료에 따른 재선임입니다.
- ② 회사 정관은 이사의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회사명 : 삼성공조주식회사

2.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19년 3월 28일

3.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

당사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속에서 국내외 계열회사들의 결산일정과 대외 경영활동을 고려하고, 재무제표사전제출제도 기한준수 가능여부,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후 관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가급적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한 당사와 계열사들의 결산지연으로 불가피하게 2019년 3월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일 : 2019년 3월 13일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 주관 "주총분산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